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6595
----------	-------

제안연월일 : 2026. 2.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연 번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 경과	
1	1020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2024. 6. 27.	상정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5차 전체회의(2024. 9. 23.)
				소위 심사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01.21.)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02.03.)
2	10176	박찬대의원 대표발의	2025. 4. 28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5.11.26.)
				소위 심사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01.21.)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02.03.)
3	10424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2025. 5. 8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6.1.20.)
				소위 심사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01.21.)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02.03.)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2.3.)는 위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26.2.4.)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되,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르도록 함(안 제7조제5항 본문 및 단서 신설).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1호의 해상민사사건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국제상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원”(제1항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도 포함한다)은 각각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본다. 다만,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항, 제4항의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은 그 지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관할법원) ① ~ ④ (생략) <u><신 설></u>	제7조(관할법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1호의 해상민사사건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국제상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원”(제1항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도 포함한다)은 각각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본다. 다만,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항, 제4항의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은 그 지정에 따른다.</u>